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안 번호	6 -185
----------	--------

제출일시 : 2012. 5.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제정이유

-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안 제4조)
- 나.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안 제5조)
- 다.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기능(안 제6조)

개정조례안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비예산사업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6 ~ 4. 16
- 의견없음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보호 업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 시설
7. 지역주민 대표
8. 학계전문가
9.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사항

4. 지역내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실비보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가족여성담당 최경자
	담당자 성명·전화	이민우 860-2263